

부산광역시 사하구세 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

검 토 보 고

1. 제안이유

- 가. 공익등 기타사유로 인한 과세면제 및 불균일과세를 위하여 지방세법제7조 규정에 따른 감면조례 설치 목적의 내용을 보완하고
- 나. 전염병예방법의 개정으로 제3군 전염병중 나병이 한센병으로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관련조문을 정리하기 위함임

2. 주요내용

- 가. 법령기능을 보완하고 과세의 공평을 기함으로써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한다는 감면조례의 설치목적으로 구체화함
- 나. 전염병예방법의 개정에 의하여 나병이 한센병으로 명칭이 변경됨에 따른 관련조문 정비

3. 관련법령 및 조례

- 지방세법제7조(공익등 사유로 인한 과세면제 및 불균일 과세)
- 지방세법제9조(과세면제등을 위한 조례)
- 전염병예방법제2조(정의)
- 사하구세감면조례제1조(목적)
- 사하구세감면조례제3조(음성나환자 집단촌 지원을 위한 감면)

4. 검토의견

- 이번 조례개정은 지방세법제7조의 규정에 따른 감면조례 설치 목적의 일부 내용을 보완하고 2000년 8월 1일부터 개정시행하고 있는 전염병예방법개정 내용과 관련한 명칭변경에 따른 조문을 정리하는 내용이므로 개정요구 조례안과 같이 통과시켜 운용함이 타당하나
- 조례의 부칙 시행일 규정에서 조례의 공포일 전부터 소급 적용 한다는 내용은 소급입법금지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는 헌법규정과 상충되므로 법률관계의 안정성 및 형평성 침해여부등에 관한 논쟁을 불러 일으킬 수 있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.

2002. 1.

총무위원회 전문위원 최삼림